

## 기숙사 사생수칙

제정	
개정	2018. 7. 30
개정	2018. 10. 01
개정	2018. 12. 10
개정	2019. 01. 07

**제1조(명칭 및 목적)** ① 이 수칙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기숙사 사생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

② 이 수칙은 사생들이 기숙사에서 지켜야할 사생수칙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하며 질서 있는 공동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원칙)** ① 사생은 기숙사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질서 있는 공동체로 만드는데 협력하여야 하며, 특히 사내에서의 음주가무, 흡연, 도박, 폭력행위 및 기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학생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생은 허가 없이 외부인과 동반하여 사내 출입하거나 숙박해서는 안 된다. 단, 직원의 허가 시에는 예외로 하고 방문객(부모님 등)의 출입 시에는 신분증을 관리실에 제시하고 방문증을 받아 패용해야 한다.

③ 사생은 배정받은 방 및 자리를 임의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④ 관장 및 직원은 필요 시 사내 출입인원의 사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사생은 공동생활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장 및 관계직원의 지도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3조(생활점검 및 점호)** ① 사생은 안전관리, 실내 청결상태, 시설·비품 이상 유무 등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점검·지도 및 사생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시행하는 생활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생활점검은 지정한 요일에 사생회 주관으로 실시한다.

③ 사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인원점검 점호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보건 및 위생)** ①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 예방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기숙사에서 공지하는 질병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검진결과서를 입사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정전염병이 발병한 경우 사생은 이를 사무실에 알리고, 즉시 치료 및 격리 등 기타 적절한 조치에 동의하여야 한다.

- ③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을 위해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④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치료하여야 하며 일체의 치료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 ⑤ 사생은 기숙사 실내에 애완동물을 반입할 수 없다.

**제5조(게시물)** 기숙사 내 게시물 부착은 직원의 승인을 얻은 후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공용물 사용)**
- ① 사생은 기숙사의 공용 시설과 비품을 아껴서 사용하며, 파손이나 손실 발생 시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 ② 사생은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허가되지 않은 전자제품이나 전열기구를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순찰)** 관장 및 관계직원은 수시로 각 호실에 대하여 순찰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모든 사생은 순찰활동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출입 및 외박)** ① 사생은 정해진 기숙사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구분	학기 중	방학 중
출입가능시간	당일 05:00~익일01:00	당일 05:00~당일24:00
출입제한시간	01:00~ 05:00 (출입문 폐쇄)	00:00 ~ 05:00 (출입문 폐쇄)

- 출입제한 시간에도 건강상의 이유와 당직근무자의 허락이 있을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다.

② 사생은 사생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대학 종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하여야 하며, 야간 실습실 사용으로 인한 외박의 경우에는 실험실습실 사용신청 자료로 대신 한다.

**제9조(상·별점 제도)** ① 상·별점부과는 모든 사생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상·별점은 정도에 따라 <상·별점 기준표>에 의거 점수를 부과한다.
- ③ 누적별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는 기숙사 담당자가 면담을 실시하여 강제퇴사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스쿨에 통보한다.
- ④ 누적별점이 10점 이상인 경우에는 기숙사 담당자가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를 스쿨에 통보하며, 차 학기 입사를 불허 한다.
- ⑤ 수칙위반 행위를 다수가 공동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에게 같은 별점을 부과 한다.
- ⑥ 교육적 목적이 있을 경우 상·별점을 받은 자의 명단과 상·별점 현황을 기숙사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 ⑦ 상·별점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7일 이내에 사무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부여된 상·별점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⑧ 수칙 위반 시 별점 부여와 봉사활동 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다.
- ⑨ 누적 별점을 상쇄하기 위하여 학기당 1회에 한하여 기숙사 내에서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부 칙

(시행일) 이 수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수칙은 2018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수칙은 2018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수칙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수칙은 2019년 01월 07일부터 시행한다.

### <상·별점 기준표>

■ 상점 기준표

순	세 부 내 용	상 점	비 고
1	건강한 기숙사 문화형성에 기여한 사생	3~10점	판단 후 결정
2	기숙사 생활에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한 사생으로 사생의 추천에 의해 관장 또는 직원이 인정한 사생	1~3점	
3	기숙사 별점 내용을 신고 또는 제지한 사생	3점	신원 절대 보장
4	생활점검 시 청결하게 관리한 사생	2점	
5	기숙사 주최 행사 참여 사생(단, 상점부여 행사에 한함)	1~3점	
6	기숙사를 위한 봉사활동 참여 사생	1~3점	
7	기숙사 내에서 분실물을 습득한 후 사무실에 신고한 사생	1점	

■ 별점 기준표

순	세 부 내 용	별 점	비 고
1	건강한 기숙사 문화형성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를 행한 사생(예시) - 기숙사 공동생활 유지를 위한 사생회, 행정실의 정당한 활동에 지장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 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숙실 내 과도한 소음 유발, 복도 이동간에 반복하여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 퇴실 후 숙실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 생활점검 시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동을 지속하는 경우 등	최대 15점까지	판단 후 결정
2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한 사생	15점	강제퇴사
3	사내 기물,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15점	강제퇴사+변상
4	절도·방화·폭행, 인화물질 및 위험물품 반입 행위	15점	강제퇴사
5	남·여 사생의 호실 출입행위	15점	강제퇴사
6	흡연(전자담배 포함), 음주 행위를 한 사생	15점	강제퇴사
7	누적별점 15점 이상인 사생	강제퇴사	
8	누적 별점이 10점 이상인 사생(다음 학기 입사불가)	봉사활동	
9	도박, 취사 행위를 한 사생	10점	봉사활동
10	비사생을 숙박/입실한 행위(비 사생 스쿨 포인트 차감)	7점	호실 전체
11	지정된 출입구, 배정된 호실(자리)을 이용하지 않는 행위	7점	
12	비상대피로(복도, 계단, 출입문 등) 확보에 방해를 주는 행위(빨래건조대, 우산, 개인 사물 등) 신설	5점	
13	무단 외박을 한 행위	3점	1일 기준
14	필참을 공지한 기숙사 프로그램에 불참한 경우(오리엔테이션, 소방훈련 등 기타)	5점	
15	실습실 종료 후 미 복귀한 행위	3점	미확인도 동일
16	생활점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경우(예시: 점검 중 이동, 숙실정리 정돈 불량, 보관 기간이 경과한 음식물 냉장고 보관 등)	2점	행위별로 각각 부여
17	허가되지 않은 전기제품 반입 및 사용행위	2점	당사자
		1점	룸메이트
18	고성방가, 쓰레기 무단투기	5점	
19	지정장소 외 음식물 반입 및 미 반출	2점	
※ 누적별점 15점 이상일 경우 : 기숙사 담당자가 면담하고 강제퇴사 조치 후 스쿨에 통보 ※ 누적별점 10점 이상일 경우 : 기숙사 담당자가 면담하고 면담결과를 스쿨에 통보			

## 서 약 서

학 사: 청강학사 ( ) / 비전학사 ( )

호실 - 자리번호:

성 명:

상기 본인은 기숙사 운영규정 및 사생수칙의 내용에 동의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1 년 월 일

성 명 : (서명)

기숙사 관장 귀하